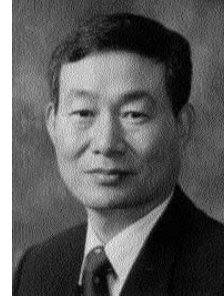


## 구조감리 제도 개선



김석구 우리회 부회장  
(주)쓰리디구조 대표



김창호 사업기획 위원장  
(주)어엔지니어링 대표

### 1. 감리제도의 현황

현행 감리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에 의하면 감리제도의 업무방식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되며 그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 1) 검측감리 :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와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여부의 확인
- 2) 시공감리 : 검측감리와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 3) 책임감리 :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① 국가 등이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공동주택건설공사
  - ② 연면적 5,000㎡ 이상의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는 1986년에 발생했던 독립기념관 화재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고 9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공공의 대형구조물 및 민간의 건축물 붕괴사고가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조적인 관점뿐 아니라 건설산업 시스템의 체계화 및 합리화를 위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리제도의 목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조 「목적」인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여기의 건설기술관리법 제1조에서 명기된 '안전'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당연히 구조적인 안전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책임감리제도의 도입배경이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임감리 현장에서 구조기술자의 참여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보면 이 점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인 것이다.

### 2.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에 의하면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할 때 공사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배치 감리원의 자격, 경력, 기술수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리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가 감리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5조(감리자 모집공고)에서도 감리회사 모집공고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는 사업주체가 당해공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철골구조, 연약지반, 암반공사 등 특수공종에 대한 감리경험이 있는 자의 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그 동안의 감리용역수행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 즉 구조나 토질 및 기초 등의 전문분야 감리원의 필요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실제적으로 이 조항을 활용하여 감리자를 선정하는 데는 극히 드문 실정이며 구조기술자를 보유한 감리전문회사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발주조건인 형평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무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건축물들은 고층화, 장스팬화, 복잡화 및 부지조건악화 등으로 기초공사 등 하부구조물의 안전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어 건축구조기술자의 감리용역의 참여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감리 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의 목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기술자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의 기술경쟁력 확보는 물론 각 분야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통해 완벽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어야 하겠다.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향상된 책임감리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청의 책임자가 건설기술관리법과 주택법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구조기술자를 보유하여 경쟁력을 갖춘 감리전문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조기술자를 책임감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는 건축보조감리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구조기술자** 1인을 상주감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는 **발주청의 의지**가 있어야만 구조감리가 가능하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제53조 「감리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상의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를 구조전문기술자가 창업하여 건축감리 명목으로 구조감리를 수행할 수는 있다.

근래 들어와 지진, 태풍, 화재, 폭발 등 재난에 대한 안전이 중요시 되고, 최근 건축물의 경향은 고층화, 장스팬화, 복잡화 그리고 부지조건악화 등으로 기초공사 등 하부 구조물과 상부 구조물의 불안전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는 현재의 대다수 건축감리원이 보유하지 못한 건축구조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구조기술자의 책임구조 감리용역의 참여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이 필요한 관계법령의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 관계법령 개정제안

현장에서 구조기술자가 감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 1) 구조기술사의 감리업무참여

구조기술사가 감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를 (표1)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표1〉 건축법시행령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p>①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1.~5. (생략)</p> <p>⑤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 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 활동주체·정부투자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01. 9. 15 후단신설〉</p> <p>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공사</p> <p>2.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01. 9. 15 개정)</p> <p>3. 아파트의 건축공사</p>	<p>①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b>구조감리전문회사</b>와 함께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b>건축구조기술사</b>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1.~5. (생략)</p> <p>⑤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 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 활동주체·정부투자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 및 <b>건축구조기술사를 보조하는 구조감리원 1인</b>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p> <p>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공사</p> <p>2.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p> <p>3. 아파트의 건축공사</p>

현 행	개 정 안
<p>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예정일부터 7일</p> <p>2. 건축사보의 배치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7일</p> <p>⑧ 허가권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이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송부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의 이종배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 및 <b>건축구조기술사를 보조하는 구조감리원</b>을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 및 <b>건축구조기술사를 보조하는 구조감리원</b>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최초로 건축사보 및 <b>건축구조기술사를 보조하는 구조감리원</b>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예정일부터 7일</p> <p>2. 건축사보 및 <b>건축구조기술사를 보조하는 구조감리원</b>의 배치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7일</p> <p>⑧ 허가권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 및 <b>건축구조기술사를 보조하는 구조감리원</b>의 배치현황이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 및 <b>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b>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송부받은 건축사협회 및 <b>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b>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 및 <b>건축구조기술사를 보조하는 구조감리원</b>의 이종배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2) 골조공사감리 세부기준의 제정

현행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은 건축사협회에서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골조공사감리세부기준'(안)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조감리의 기준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건축법 제21조를 <표2>과 같이 개정함이 필요하다

<표2> 건축법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p>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95.1.5 개정)</p>	<p>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나 <b>건축구조기술사</b>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축사협회 및 <b>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b>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p>

3)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구조감리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구조감리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를 <표3>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표3>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현 행	개 정 안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b>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b>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p> <p>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p>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p> <p>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p> <p>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b>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b></p> <p>1. ~ 4. (좌동)</p> <p>③&lt;추가&gt;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b>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골조공사감리세부기준에 의한 구조감리에 의하여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내진안전성)이 확보되도록</b>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b>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b></p> <p>2. <b>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b></p> <p>3. <b>제5조 제4항 제3호 규정에의한 다중이용 건축물</b></p>

4) 구조감리 전문회사를 통한 구조감리참여

구조기술사가 구조감리 전문회사를 통하여 구조감리업무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표4>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 제53조 및 주택건설 촉진법 제34조의 6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를 <표6>과 같이 개정하여 구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 기준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표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3조

현 행	개 정 안
<p>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는 종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설비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설비감리전문회사로 구분한다.(97. 7. 21 개정)</p> <p>② 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97. 7. 21 개정)</p> <p>③ 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97. 7. 21 개정)</p>	<p>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는 종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설비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b>구조감리전문회사</b>로 구분한다.</p> <p>② 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97. 7. 21 개정)</p> <p>③ 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97. 7. 21 개정)</p>

현 행	개 정 안
④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 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97. 7. 21 개정)	④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 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97. 7. 21 개정)
⑤ 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설비공사로 단독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거나, 건설공사 중 설비부문에 대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토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97. 7. 21 개정)	⑤ 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설비공사로 단독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거나, 건설공사 중 설비부문에 대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토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97. 7. 21 개정)
	⑥ <u>구조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구조체 공사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거나, 건설공사중 구조체공 사부문에 대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 토 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 동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lt;추가&gt;</u>

〈표5〉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6

현 행	개 정 안
① 법 제33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 회사	① 법 제33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 회사와 함께 구조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지역에 2 이상의 주택건설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지역에 2 이상의 주택건설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자 (이하 '감리원'이라 한다.)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착공신고,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체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착공신고,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체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감리자의 능력·실적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감리자의 능력·실적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표6〉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

현 행	개 정 안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b>② 기술사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와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건축감리전문회사나 종합감리전문회사는 구조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있다.&lt;추가&gt;</b>

#### 4. 정리 및 요약

1995년 삼풍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시공 중이거나 사용 중인 건물의 붕괴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후진적 상황은 국가의 대외신인도 추락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구조기술자에게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건축문화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안한바와 같이 구조기술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감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